

의안 번호	1933	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25.(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3. 25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4. 5.(화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 특례제한법」 개정으로 전자 송달제도 및 자동 이체 납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감면 조례개정 추진
- 전자고지서 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납세편의 및 과세행정 효율성 도모

3. 주요내용

- 가.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(안 제2조)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제4항에 경감사항 직접 규정
- 나.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(안 제6조)
 - (제1호)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1개 신청: 150원 → 500원
 - (제2호)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: 500원 → 1천원

※ 울산광역시 및 구·군 세액공제액 통일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, 제92조의2제1항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세 특례 제한법」 개정으로 전자송달 제도 및 자동 이체 납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납세편의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이며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

근 거 법 규

지방세 특례제한법

제38조(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) ④ 종교단체(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)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. <신설 2011. 12. 31., 2013. 1. 1., 2014. 1. 1., 2014. 12. 31., 2018. 12. 24., 2021. 12. 28.〉

제92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전자송달 방식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자동이체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자동이체 방식”이라 한다)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21. 12. 28.〉

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 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